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외국인 등 국내 비거주자는 가상화폐 소득 원천징수"

가상화폐 과세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외국인과 같은 국내 비거주자 과세 방법 등에 대해 컨설팅을 열었다.

3일 국세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 중 28곳을 불러 과세 관련 컨설팅을 진행했다.

참여 업체는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과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으로, 이번 컨설팅에서 국세청은 비거주자 가상화폐 과세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국내 거주자는 가상화폐 소득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거래소 등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액은 가상자산 양도가액의 10%나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옮겨올 때의 취득가액은 거래소가 고시한 가격으로 산정한다. 국내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옮긴 경우에는 양도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거래소들은 가상화폐 이동 시 거래자 개인이 인지한 시점과 가상화폐 지급에서 자산이 확인되는 시점의 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취득가액 고시를 위한 정확한 시점 기준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과세 시행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당국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자 업계에서는 "무리하게 과세를 밀어붙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 과세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서 가상화폐 과세 유예가 거론되고 있어 내년 과세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 과세 시작 시점을 2023년 1월로 유예하는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계, '새 외부감사법' 비용만 들고 감사품질 변화없어

전경련은 지난달 21~27일 상장기업 291곳(코스피 168곳, 코스닥 123곳)을 상대로 외부감사법의 효과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응답자의 94.2%는 새 외부감사법으로 인해 비용이 늘었다고 대답했고, 62.2%는 감사 품질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오히려 떨어졌다는 응답은 10.5%였고, 상승했다는 답변은 27.3%였다.

새 외부감사법을 당장 개선(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55.5%, 중장기 개선은 37.9%, 개선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은 6.6%에 그쳤다.

손성규 연세대 교수는 "감독기관이 복수의 회계법인을 추천하고 피감사기관인 기업이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는 새 외부감사법이 없어도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기적 정제도와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일몰을 뒤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29일 개통... 회사에 자료신청하면 끝

올해부터 근로자가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사라지게 된다.

근로자가 자료제출 신청서만 회사에 제출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9일부터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식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경우도 자료제공에 사전동의했다면 일괄 제공된다.